



# 스위스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보장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강성호 연구위원

스위스는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DC형 퇴직연금제도에도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저수익률 보장(Guaranteed Minimum Interest Rate)제도를 운영함. 주요내용은 국채나 주식, 채권, 부동산 수익률을 고려해 스위스 연방의회가 최저수익률을 매년 결정한다는 점, 투자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의 운용지시권은 배제된다는 점, 최저수익률 보장은 기금위원회가 책임지며 최저수익률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자유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점 등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 스위스처럼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검토가 요구됨

연구

## ■ 스위스의 DC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수익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저수익률 보장(Guaranteed Minimum Interest Rate)제도를 운영함<sup>1)</sup>

- 스위스는 1985년 강제가입방식의 퇴직연금을 도입한 최초의 OECD국가로 국민연금(1층)과 퇴직연금(2층)을 합쳐 은퇴전 소득의 약 60%를 목표 소득대체율이 되도록 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함
  - 퇴직연금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의가입도 허용하고<sup>2)</sup> 퇴직연금 기여율은 노·사 공동 부담하며 연령별로 기여율이 차등 적용됨(〈표 1〉 참조)

〈표 1〉 스위스의 연령별 퇴직연금 기여율(2015년 기준)

연령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여자)/65세(남자)
최소기여율(%)	7%	10%	15%	18%

자료: Pension at a Glance(2016);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2015) 등에 의해 작성

1) 최저수익률 보장 관련규정은 스위스 퇴직연금법(BVG) 제15조 제2호~제3호 참조  
 2) 연소득 24,675 스위스 프랑(약 31.6백만 원)이하 근로자는 생활보호차원에서 강제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의 노후소득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보장함

- 최저수익률<sup>3)</sup>은 금융시장의 수익률을 고려해 매년 법으로 결정되며, 연금기금은 강제적용범위(의무가입 대상)에 최저수익률을 적용하는 구조임<sup>4)</sup>
- 스위스의 최저수익률 보장제도는 충분한 연금재정 확보, 퇴직급여의 연금화 유인에 영향을 미쳐 소득보장제도로써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에 기여함
  - 여기에서는 스위스 최저수익률 보장제도의 주요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함
- (결정주체) 채권수익률 특히 국채나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수익률 등을 고려해 스위스 연방의회가 최저수익률을 결정함
  - 매년 정기적으로 스위스 연방퇴직연금위원회가 최저수익률을 권고하고,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연방의회가 최종 결정함(〈표 2〉 참조)
    - 최저수익률은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해 결정되며, 국채수익률과 주가, 채권, 부동산 수익률 등이 주요 고려대상임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를 설정하여 왔으나 이후 금융상황을 고려해 2015년에는 1.75%가 설정됨

〈표 2〉 스위스의 연도별 최저수익률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익률(%)	2.50	2.75	2.00	2.00	2.00	1.50	1.50	1.75	1.75

자료: Pension at a Glance(2016);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2015) 등에 의해 작성

- 각 기금위원회는 매년 강제적용범위(의무가입대상 금액)에 대해 연방의회가 결정한 최저수익률을 적용함
  - (운용지시) 투자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연금펀드 및 투자방식 결정 등 근로자의 운용지시권은 부여되지 않음
    - 스위스의 의무적 퇴직연금은 DC형의 특징인 명목개인계좌(Notional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NIRA)를 설정하고 장부상으로 적립함
      - 명목 개인계좌에는 기여금의 실제 자산가치가 아니라 크레딧이라는 가상의 청구권이 적립되고 퇴직 급여수준은 크레딧의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함<sup>5)</sup>
    - DC형 퇴직연금임에도 최저수익률 보장이 이루어지므로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연금펀드나 투자방식을 결
- 
- 3) 누적된 기간 동안 적립된 납부금액을 바탕으로 법률로써 확정되어 지급하게 되는 최소수익비율을 의미함  
 4) 최저수익률 보장제도는 전체 기여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용범위인 의무가입(Mandatory)대상금액에만 적용되고 자율가입(Extra-mandatory)대상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2015), 『퇴직연금 동향 보고서』, p. 185 참조  
 5) 성주호 외(2014),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실행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참조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보장책임) 최저수익률 보장책임은 기금위원회가 지며 최저수익률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자유 재량권이 부여됨
  -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금위원회(관리운영주체)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납부된 보험료는 기금위원회의 책임하에 운용됨
  - 기금위원회의 수익률이 정부가 고시한 최저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기금위원회는 자산에서 부채를 늘려 가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함
    - 연소득 24,675~84,600(스위스 프랑) 구간이 의무가입대상(강제가입대상)구간이며 이 구간에 납부된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최저수익률이 보장됨
  - 실제수익률이 최저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기금위원회 재량으로 잉여부분 처리가 가능함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미흡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해 최소한도의 운용수익률을 보장하는 스위스 사례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재정지원(예: 보조금지원)에 기초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함<sup>6)</sup>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스위스처럼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검토가 요구됨
  -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유인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등 한시적인 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보다 요구됨
  - 우리나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 투자상품 정보부족 등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보장 강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최소한도의 운용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ki21**

6) 기금형제도 도입법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법안 등이 2018년 4월 18일 국회에 제출됨